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4
------	-----

2007년 9월 4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7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정동진)

가. 제안이유

-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2006.12.1)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고장·손괴 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신규 교통안전시설의 적용대상 및 관리대상자를 지정함(안 제3조·제4조 및 별표, 제26조의 2 신설)
 - 시설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시설 관리자에게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 등을 규정함
- 나)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을 재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조정함(안 별표)
 - 도로부속물 중에서 교통국장이 관리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교통안전·관리시설물로 구분(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도로표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부속물)
 - 교통안전부속물 :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 다)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고장·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 신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한도를 규정
 - 포상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령)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6일 서울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인수('06.12.1)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을 본 조례의 적용대상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대상자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해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로 대분류(단, 종전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은 “교통안전부속물”로 전환)하여 건설기획국장과 교통국장의 총괄관리업무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고장·손괴 인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획국장과 교통국장의 총괄관리 업무범위 조정관련 의견
(안 제4조, 별표)

- 건설기획국장이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현행 시설물 중 “도로부속시설물”을 상위법 상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도로부속물”로 수정하고, 동 조례 별표에서 “도로부속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국장의 총괄관리업무를 다음 표와 같이 별도 규정하는 한편,

[표] 현행 도로부속시설물의 재분류 및 명칭변경

종 전	개 정	
도로부속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획국장 : 공동구,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 교통국장 : 도로표지, 지능형교통 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교통안전·관리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획국장 : 공동구,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기타 도로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국장 : 도로표지, 지능형 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부속물

- 현행 교통국장이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시설물 중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과 “교통안전부속물(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로 구분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¹⁰⁾”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기획국장과 교통국장의 총괄관리 업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행정도모하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또한, 시도(市道) 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을 그동안 자치구청장이 관리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시도 관리자인 건설안전본부장으로 관리자를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나. 신고포상 근거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안 제48조)

- 본 규정은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해 고장 또는 손괴 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근거와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실시간 고장·손괴 인지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율(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로 정함에 따라 고가시설물의 경우 포상금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규칙 제정시 정액 상한도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로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보안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다. 기타 의견

- 동 조례의 경우 소관은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으나 교통국 소관업무(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규칙의 개정 및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바,

10)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부속물 현황]

구 분	중앙분리시설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수 량	8,069m	19,567개	196개

향후 현행 조례를 서울시 도로관련 주요시설물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조례로 운영하고 교통국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실국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동 조례 중 교통국 소관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김귀환, 박종환 위원)

답변) 향후 적극 검토하겠음(정동진 건설기획국장)

질의) 신고포상금 상한율이 과다함 (김귀환, 박희성 위원)

답변) 시행규칙 제정시 고려하겠음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불 임 참 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